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판사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- 코로나19 영향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운 상황에서, 원격회의와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판사회의의 원격회의 진행 근거를 신설함(안 제10조의2)
- 판사회의의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 규정을 신설함(안 제10조의3)

4.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붙임과 같음

5. 신·구조문대비표

붙임과 같음

대법원규칙 제 호 2020. . . 공포

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2 (원격회의)

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(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, 이하 같다)로 진행할 수 있다.

1. 이 규칙 또는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

2. 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

3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

②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③ 원격회의 진행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.

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3 (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)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.

1. 이 규칙 또는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

2.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

3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

②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
③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

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10조의2 (원격회의) ① 판사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원격회의(동영상이나 음성을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진행하는 회의, 이하 같다)로 진행할 수 있다. 1. 이 규칙 또는 내규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규정한 사항 2. 판사회의에서 원격회의에 의하기로 의결한 사항 3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원격회의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원격회의에 참여한 판사는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③ 원격회의 중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의결할 수 있다.
<신 설>	제10조의3 (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따른 의결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
	해당할 때에는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 또는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을 할 수 있다. 1. 이 규칙 또는 내규에서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하여 의결하기로 규정한 사항 2.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하여 결정하기로 의결한 사항 3.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의장이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 ②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에 의할 경우 구성원인 판사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한 판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③ 온라인 투표, 서면 투표는 3일 이상 7일 이하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실	
연락처	(02) 3480 - 1216